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545

JCCT 2021-8-65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 본 소방특별조사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

이재욱*, 정기성**

Jae Wook Lee*, Gi Sung Jeong**

요약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주요어 : 소방검사, 소방시설, 관계인, 소방특별조사, 민간자율점검

Abstract Under the Act amended on August 4, 2011, a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y the relevant person (owner, manager, oil refineries), and the responsibility was also given to the relevant person. Instead of directly entering all existing fire-fighting targets and investigating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status of fire-fighting facilities, the fire-fighting agency selects and visits some targets every year, checks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status of fire-fighting facilities, corrects them, and imposes fines, etc.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ere the establishment of a private autonomous correction system by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of officials, lack of firefighting professionals, possible corruption due to frequent public contact, and responsibility of fire agencies. However, many problems arose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fire investigation system. A special fire investigation, one of the fire safety systems, checks whether related public officials and especially fire officials are properly installed, maintain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s were introduced as firefighting inspections at the time the firefighting law was enacted in 1958, and have undergone a revised process more than 30 times until recently. Fire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Act”, the existing firefighting inspection was changed to a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 and accept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Fire Service Act in 1958, a special firefighting investigation was introduced as a firefighting inspection, and until recently, more than 30 revisions have been made. In 2003, as the existing fire fighting system was divided into four laws, it was approved by changing the existing fire fighting inspection to a special fire fighting investigation in the "Fire Fighting Facility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Management Act".

Key words : Fire inspection, Firefighting facilities, Related person, Firefighting special investigation, Private Self-Check

*정회원,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시간강사 (제1저자)

**정회원,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7월 12일, 수정완료일: 2021년 7월 27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1일

Received: July 12, 2021 / Revised: July 27, 2021

Accepted: August 1, 2021

*Corresponding Author: 119wsu@naver.com

Dept. of Fir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 Korea

I. 서 론

최근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축물이 대형화, 초고층화 되고 있으며 전기와 가스 등의 에너지의 사용이 다양화됨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민들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행정이나 소방활동 등은 그 대응과정이나 결과보다 사전에 불행한 결과를 미리 예방하고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법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시설을 화재나 재난·재해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나 유지·관리가 매우 중시된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소방검사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방대상물에 방문하여 소방 시설의 고장이나 정상 작동 여부, 유지·관리 상태 등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2013년 5월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그 명칭을 소방특별조사로 바꾸었다.

그리고 화재나 재난·재해 발생 시에 소방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위치·구조 등에 관한 유지·관리의 책임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소방기관의 소방특별조사의 적정성과 건물소유자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책임에 대한 논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방기관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예방 등 차원에서 소방행정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예컨대, 일정한 안전성을 감추지 않은 소방대상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관계지 등이 화재위험에 대한 희박한 인식으로 인한 부주의 등은 건축물의 안전성 결여로 연결됨으로써 화재 발생 빈도를 높이게 되고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손실의 위험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1].

소방특별조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전체소방대상물 중 20% 정도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민주화 추세에 맞추어 이전의 소방기관 주도의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 등을 검사하던 제도에서 탈퇴하여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자율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소방공무원이 주관이 되어 전체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하던 기존의 제도와 현재 운행 중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중에서 20% 정도의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소방공무원 등이 확인하는 소방특별조사에 대하여 분석하고, 화재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과 완벽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인과 소방기관이 만족할만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소방특별조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1. 소방특별조사 의의

소방특별조사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하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해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을 30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소방검사는 전(全) 소방대상물을 검사하였으나 소방특별조사는 전(全) 소방대상물 중 일정비율만을 조사한다. 이는 소방검사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존의 소방검사는 전체 소방대상물을 검사하는 관계로 소방점검이 소극적이며 형식적인 면이 있었으며, 소방대상물의 일정 비율만을 검사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3]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현장 조사하는 행정기관의 활동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여한 법적 의무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소방특별조사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다. 기존의 소방검사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할

표 1. 기존 소방검사와 소방특별조사 비교[2]

Table 1. Comparison of existing fire inspections and special fire investigations

구분	기존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
절차	-검사개시 24시간 전 통보 -검사반 편성 검사 실시 -현장에서 검사서 부분 송부	-조사개시 7일전 문서로 통보 -조사반 편성 조사 실시 -조사결과 문서로 결과 통보
주기	-필요한 경우 실시 -정기 소방검사(매년 소방관서의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특별소방검사(화재발생 또는 언론보도등긴급을 요하는 경우 실시)	-특별히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에 따라 조사 ※계절별, 화재취약시기별, 대형화재발생등에 따라 조사 필요
자격	-시·도 소방공무원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공무원 -관련 전문가
검사항목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방화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에 관한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검사방법	-인명피해우려가 있는 층이나 -장소 중점 실시 -수신반, 소화펌프, 제어반이 설치된 층이나 장소 실시	-자료제출 요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상황 조사
주요특징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자체 계획에 의거 정기적 실시	-필요시 선정위원회를 구성 소방 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당국이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4].

이를 종합하면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이를 소방기관등이 준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소방특별조사의 법적 근거

소방특별조사는 1958. 03. 11. 소방법 제4조에 근거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검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소방검사제도가 변화되고 2003. 05. 29. 기존의 소방법이 4개의 법률로 나누어지면서 소방검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왔다. 기존의 소방검사가 2011. 08. 04. 소방시설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현행의 소방특별조사로 전환되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소방특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련구역에 있는 소방 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 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 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던 종전의 소방검사 체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상세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2011. 08. 04. 법률 제 11037호로 개정되어 2012. 02. 05.부터 시행되었다[5].

소방시설법 제25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도록 하고,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자체점검

을 전제로 하고, 이 자체점검이 법령대로 유지·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소방특별조사이다.

III. 소방특별조사의 주요내용

3.1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있다. 세부항목으로 ①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화재의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⑤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 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⑦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항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전 예고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있다.

3.2 소방특별조사의 대상 선정 방법

소방시설법 제4조 제3항에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등 소방이나 방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동법 시행령 제7조의6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한 대상이 중복적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3 소방특별조사의 절차

소방시설법 제4조의3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다만, ①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표 2. 소방특별조사의 과정[6]

Table 2. The process of a special fire invest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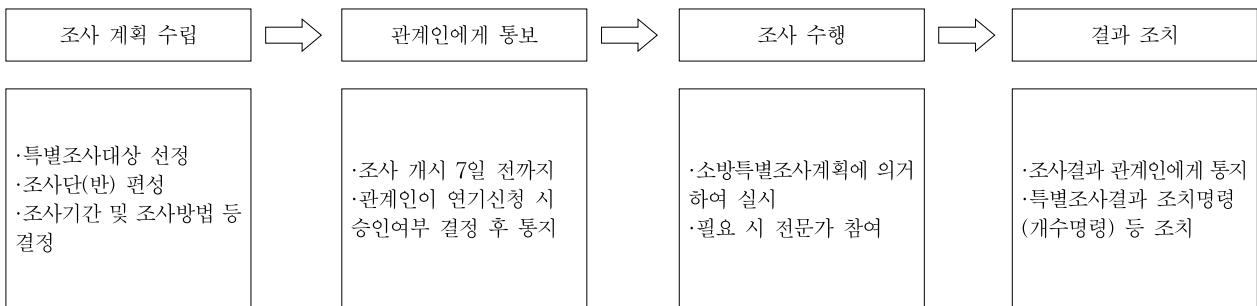


표 3. 중앙소방특별조사단과 지방소방특별조사 운영실적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Operational Performance of Special Local Firefighting Investigation with the Central Firefighting Special Investigation Team

구분	조사 대상	적발 대상	적발률(%)	조치내역				
				조치명령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	기타
시·도 소방본부 (16~20년)	955,626	288,002	30.1	133,655	44,209	935	5,640	136,490
중앙소방특별조사단 (17~20년)	716	698	97.5	3,204	2,817	3	193	8,698

주 : 2021 소방청 자료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에 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의 조치가 필요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항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없고, 동법 제3항은 관계인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소방특별조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 중에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 정도를 선정하고 연간, 월간, 주간으로 나누어 조사일정을 수립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에 공지된 소방대상물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나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을 조사한다. 소방특별조사가 끝나게 되면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분을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조사를 마치게 된다.

3.4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운영

소방시설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①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②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③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하다면 관계 중앙행정 및 시·군·자치구나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친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취득한 자료나 비밀을 다른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는 통상적으로 소방서에서 소방관련 자격증보유자나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2명 정도로 구성하여 소방대상물에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나 연간 20% 조사 시 적발 실적이나 조치 내역이 저조하고 조사자들의 능력이 부족하여 부실조사의 개연성이 있다는 평가이다.

3.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시설법 제5조는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방행정 분야에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방행정의 주체인 소방기관에게 강력한 조치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위의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사실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IV. 소방특별조사의 개선방안

4.1 소방특별조사 인력 전문성 강화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특별조사의 목적은 건축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 등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위험이 있는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소방공무원은 화재안전기준 등 관계법령 뿐만 아니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구조 및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먼저 조사대상의 건축물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별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

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화재안전기준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이해하고 이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작동되고 유지·관리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건축물 관계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소방특별조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소방교육기관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방공무원을 소방특별조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소방시설관리경력을 갖춘 자격자에 대한 경력채용을 강화하여 부족한 소방시설 전문가를 충원·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2 소방특별조사단 상설·확대 운영

대부분의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는 2명 내외 인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원으로 하여금 한정된 시간동안 다수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방식으로는 대규모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로인해 대부분의 경우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사범위가 특정 장소나 소방시설에 국한 될 수밖에 없고 부실한 소방특별조사는 행정기관의 책임 등 대처가 곤란해 질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소방조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문책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규모,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별 조사단의 규모와 점검반 인력을 차등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에 따라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소방특별조사단(21명)을 구성하여 국가기반시설,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 대형화재로 인하

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조사가 가능해 졌다.

따라서, 현재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을 법제화하여 소방대상물의 규모가 1급 방화관리대상 등 대형시설은 시·도소방본부의 광역소방특별조사단에서 조사요원 4~5명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반이 조사하도록 소방특별조사단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4.3 소방특별조사단의 기획조사 활성화

소방특별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선정부터 현장조사와 결과보고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특정소방대상물 중 20% 이내로 점검대상을 선정하되 규모, 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화재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1일 1~2개 정도로 탄력적인 점검대상수의 가감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한 대상이나 동일업체에서 연속하여 점검한 대상, 적발사항이 없는 대상 순으로 자체점검(종합+작동) 결과의 20% 이내로 대상별 표본조사를 도입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 동일대상의 중복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을 20%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화재안전정책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위험도, 사회적 이슈, 건축물의 노후도, 다중이용시설의 수용인원 등의 화재위험도를 평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방대상물의 선별적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를 20년 이상 된 노후 대상물이나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지역(대상), 지하연계 고층건축물, 기타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상물(시설) 등은 기획조사를 통해 소방특별조사의 내실화를 가해야 한다.

4.4 소방특별조사 운영 매뉴얼 활용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이나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기존 매뉴얼을 분석하고 내용을 보강하여야 한다. 법령의

개정사항,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이나 취지, 연혁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관계인에게 잘 설명하고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 방법이나 구조 등에 대하여 동영상, 사진 등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가미하여 쉽게 이해가 되도록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뉴얼은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유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점검내용은 소방시설 등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피난경로나 비상구, 대피방법 등에서는 차이도 있다.

V. 결론

최근 밀양병원화재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등 잇따른 대형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소방행정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형화재가 발생한 후에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소방특별조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다. 소방업무 중에서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분야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소방특별조사에 대하여는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등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있고 소방시설의 점검등도 관계자가 수행을 하고 소방기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소방검사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고, 현행 소방특별조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방특별조사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소방관련 전문자격증 소유자의 채용을 늘리고, 직원들의 재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대상물의 규모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반 인력 등을 차등화해 정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단의 운영을 상설화하고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소방특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사대상선정부터 현장조사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중복조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조사의 항목이나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로 상세하게 제작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를 예방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등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M. H. Jeon, 「Fire Inspection Theory」, Book publishing Dain, (2020), 2020. p. 37
- [2] M. H. Jeon, 「Fire Inspection Theory」, Book publishing Dain, (2020), p. 68
- [3] M. H. Jeon, 「Fire Inspection Theory」, Book publishing Dain, (2020), p. 53
- [4] J. Y. Yi, W. H. Chung, “A Le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Central Law Society, Vol. 22, No. 1 (2020), p. 193
- [5] K. S. Hwang, 「Firefighting Act」, ESSAY, (2015), p. 175
- [6] J. Y. Yi, W. H. Chung, “A Le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Central Law Society, Vol. 22, No. 1(2020), p. 211
- [7] M. H. Jeon, 「Fire Inspection Theory」, Book publishing Dain, (2020)
- [8] K. S. Hwang, 「Firefighting Act」, ESSAY, (2015)
- [9] O. S. Kim, A Study on the Role of Special Judicial Police on Fire Investigation and Firefighting Act Treatment, Master’s thesis at Dankook University, (2014)
- [10] J. K. Min, “A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Special Fire Safety Inspector”, Master’s degree the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0)
- [11] S. Y. Park, “A Study on Measures to Build Support System of Related Organizations in Fire Inspection for Effective Fire Prevention”, Master’s thesis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1)
- [12] Y. P. Seong et al 9, “Special Fire Investigation, from start to finish”, Busan Fire Safety Headquarters, (2012)
- [13] J. Y. Yi, W. H. Chung, “A Le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Central Law Society, Vol. 22, No. 1 (2020. 03.)
- [14] J. K. Lee, “A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Fire Inspection”, Master’s thesis at Changwon University, (2006)
- [15] K. S. Jeong, J. H. Kim, “Prediction of the Manpower Requirement for Special Fire Inspection”,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31, No. 2, (2017)

DOI : 10.7731/KIFSE.2017.31.2.082

- [16]G. S. Ha,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Special Inspection for Fire Protection- With a Focus on the Busan Metropolitan City -”, Master’s thesis at Daejeon University, (2017)
- [17]G. S. Ha, C. H. Hwang, “A Study on Reasonable Number of Fire Inspection Member”, “Korea Fire Fighting, Vol. No”, (2016. 10.)
- [18]Korean Society of Organizations, “A Study on the efficient allocation of duties and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improvement plan of the fire inspection system”, (2009)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